

대구대학교-대구사이버대학교-YTN의 업무제휴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, (주)YTN(이하 “각 기관” 이라 한다)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제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각 기관은 상호발전과 학생복지 증진 및 홍보 협조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협력)

각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

가. 대구대학교 / 대구사이버대학교

- 학교 홈페이지에 복지몰 배너 등재 및 운영에 따른 시스템 지원
-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

나. (주)YTN

- 구성원(재학생/교직원)을 위한 ‘대학생 복지몰’ 제공
- 대학 현안에 대한 방송 홍보 시 지원 협조
- 대학생 복지몰 운영에 따른 적립금 발전기금 기부
-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

제3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

이 협약에 규정한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비밀유지)

협약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상대 기관의 비밀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협약서이행)

각 기관은 각각의 업무 협력 상 관계 범위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 또한 협약 체결된 사항의 수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한 업무는 각 기관의 담당부서가 관장한다.

제6조(협정기간)

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1개월 전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자동 연장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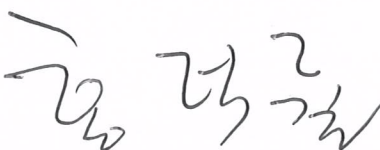
각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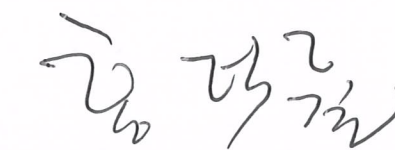
2016. 4. 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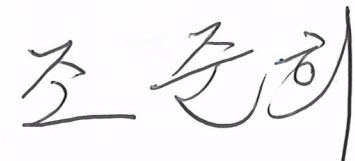
 **대구대학교**
DAEGU UNIVERSITY
총 장 홍 덕률

 **대구사이버대학교**
DAEGU CYBER UNIVERSITY
총 장 홍 덕률

 **YTN**
대표이사 조 준희





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